

의안번호	제 1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9월 5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9월 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자치연수원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변경(안 제5조제3호)
 -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- ➔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
- 시설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 변경(안 제8조)
 - 시설사용료는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 납부
 - ➔ 시설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
 -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
 - ➔ 전액 또는 일부 반환
 - 천재지변이나 공익 목적으로 취소 : 전액
 -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 : 취소 시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연수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 1. 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
 2.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 할 경우
 - 가. 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
 - 나. 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
 - 다. 사용 개시일 이후 :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① <u>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원 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① <u>연수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원 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. <u>그 밖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 	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)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. <u>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</u>
<p>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<u>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<u>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 2. <u>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 나. 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다. 사용개시일 이후 :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